

(예시4)

- 2003. 2. 5. 정직3월 처분(사면대상이 아님)
- 2005. 1. 10 감봉1월 처분
- 2006. 12. 2. 특별사면

☞ 선행처분인 정직3월은 사면되지 않고 후행처분인 감봉1월만 사면되었을 경우, 사면된 감봉 1월은 사면일인 2006. 12. 2.자로 말소, 사면일 이전에 선행처분이 단일처분으로서의 말소제한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2003. 5.부터 기산하여 7년이 지난 2010. 5. 5.자로 정직 3월 말소

나) 직위해제 처분기록

(1) 말소제한 기간의 경과

(가) 단일처분의 경우

- ① 규정 제9조제2항제1호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이란 직위해제처분 후 복직명령을 받은 날을 말함.
- ②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 동안 다른 직위해제처분이 없을 때는 2년이 경과한 때 말소함.

(나) 중복처분의 경우

- ① 규정 제9조제2항제1호의 단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복직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또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선행 직위해제 처분 후 복직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만료될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예시)

- 2002. 5. 9. 직위해제
- 2002. 8. 9. 복직
- 2004. 2. 27. 직위해제
- 2004. 5. 27. 복직

☞ 선행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 시점인 2002. 8. 9.부터 기산하여 두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제한 기간을 합한 4년이 경과된 때인 2006. 8. 9.자로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

- ② 다만, 합산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최종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된 날을 기준으로 말소함.

(예시)

- 2003. 4. 15. 직위해제
 - 2003. 7. 15. 복직
 - 2005. 4. 1. 직위해제
 - 2010. 7. 4. 복직
- ☞ 2010. 7. 4.자로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

(2) 직위해제처분의 무효·취소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원 직위해제처분일자로 말소함.